

2 개정 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112조(재산세 도시지역분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<u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, 골프장, 유원지,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	<p>제112조(재산세 도시지역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(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)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(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(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</u>
<p><신 설>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2.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, 골프장, 유원지,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</u> <u>④ 제3항 제1호에서 “미집행”이란</u>